

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5-40호

임실군의회 김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임실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임실군의회 회의규칙」 제 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5년 7월 17일

임실군의회의장



1. 제정이유

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임실군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(안 제3조)
- 다.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(안 제4조)
- 라. 사업 지원,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규정(안 제5조 ~ 제6조)
- 마. 협력체계 구축, 중복지원의 제한 및 준용에 관한 규정(안 제7조 ~ 제9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·법인 또는 기관·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기한: 2025년 7월 22일까지

나. 제출방법: 서면·우편·전자우편·직접방문

- 1) 주 소: (55927)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, 임실군의회(의회사무과)
- 2) 전 화: 063-640-2883, 팩스 063-640-2699
- 3) 전자우편: charity81@korea.kr

4. 제정안: 붙임

임실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임실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스마트농업”이란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다.
2. “스마트팜”이란 작물 재배 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·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임실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·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(이하 “육성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와 전략
2.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
3.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
4.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
5.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자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
6.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 및 확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군수는 육성계획 수립·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지원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
2.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시설 조성, 관리 및 운영
3.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·유통·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
4.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·개발 및 보급
5. 스마트농업 관련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
6.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
7. 스마트팜 지원 사업
8.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사무의 위탁)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관련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 등은 「임실군 사무위탁 기

본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·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8조(중복지원의 제한)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·단체·농업인 등에 대하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,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임실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- 임실군의회 김종규의원

관련법령

□ 『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스마트농업”이란 농업(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생산성·품질 향상과 경영비·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.
2. “스마트농업데이터”란 스마트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활용되는 생육환경 및 생육상태 등에 관한 정보로서 수치·문자·영상 등의 형태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.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□ 『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』

제35조(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·연구 등의 진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 생산기술, 농업 생산기반 정비기술,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, 농업 경영기법, 농업인 안전작업기술, 농산물 유통기술, 농산물 가공·식품 제조기술 및 음식물 조리법 등에 관한 연구·개발·보급과 농업 및 식품산업 현장연구, 산학연 공동연구 및 연구평가관리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6조(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·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